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

2023. 9. 27. 제정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 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에 따라 경기아트센터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·처리,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공익침해행위" 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 - 2. "공익신고" 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 - 3. "공익신고등"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 - 4. "공익신고자" 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 - 5. "공익신고자등"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 - 6. "불이익조치" 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.
 - 7. "내부 공익신고자"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공공기관(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)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(이하 "공직자"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- 제4조(신고의무)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5조(책무) ① 공공기관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공공기관은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,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③ 공공기관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세부추진시책의 수립) ① 공공기관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(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)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7조(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) ① 공공기관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
 - 2.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
 - 3.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직자의 상담 및 구제 절차
 - 4.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 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, 조회,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8조(공익신고센터의 설치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 - 1.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, 처리
 - 2.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
 - 3.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
 -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또는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.
- 제9조(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) ① 공공기관은 감사 또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공직자를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, 공익신고의 상담·접수, 처리,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

는 아니 된다.

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

- 제10조(공익신고 상담)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공익신고의 접수)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·우편·인터넷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.
 -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제12조(신고서식의 비치 등)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 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.
 -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,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.
- 제13조(공익신고 접수절차)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,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.
 -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·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,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·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.
- 제14조(대표자 선정 등)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 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-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,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.
- 1. 신고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· 비속 또는 형제자매
- 2. 〈삭 제〉
- 3. 변호사
- 4.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
- 제15조(출장 접수)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.
- 제16조(보완의 요구)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,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 - 1. 공익신고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
 - 2.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
 - 3. 공익침해행위 내용
 - 4.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
 - 5.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
 -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수 있으며,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.
 -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.
- 제17조(신고의 취소)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"종결"로 처리할 수 있다.
 -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하거나,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.

- 제18조(공익신고기록)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, 신고서,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.
 -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.
 - ④ 공공기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 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

- 제19조(공익신고의 조사 등) ① 공공기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·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·수사를 하고, 조사·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② 공공기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·송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처리하되,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이내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 - ③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·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·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보호·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하다.

-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·송부한 사건의 조사·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·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·수사결과를 통보한다.
- 1.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
- 2. 조사·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
- 3.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
- 4.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
- 5.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
-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·송부한 사건을 조사·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 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.
- ⑥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·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공공기관은 제1항의 조사·수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 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제7조,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.
- ⑧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 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20조(공익신고의 이송 등)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공공기관의 관할 에 속하지 아니하거나,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·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·송부할 수 있다.
- 제21조(공익신고의 종결)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·수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.
 - 1.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
 - 2.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
 - 3.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
 - 4.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
 - 5.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. 다만,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 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6.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·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 난 경우
 - 7.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
 - 8.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
 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・수사 또는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 야 한다.
- 제22조(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)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 공기관에 이첩·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·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·우편·인 터넷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 - ② 공공기관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.
 -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

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

- 제23조(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) ① 공직자는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.
 - 1. 공익신고자등의 성명·사진·주민등록번호·전화번호·주소·근무처 등 인적사항
 - 2.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
 - ② 공직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③ 공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24조(불이익조치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
- 제25조(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) ① 공공기관은 공익신고등을 한 공직자가 전직, 전출·전입,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② 공공기관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공직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,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- 제26조(신변보호 안내) 공공기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- 제27조(장계의 감면) ① 기관장은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

- 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- ② 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,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- 제28조(불리한 처분의 감면) ① 기관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 - ② 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9조(공익신고자 보호)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.
 - 1. 법 제11조에 따른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
 - 2.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
 - 3.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
 - 4.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
 - 5.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
 - 6.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
 - 7.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
 - 8.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
- 제30조(보상금 지급신청 안내) ①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

만,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,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벌칙 또는 통고처분
- 2.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
- 3.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
- 4. 과징금(인허가 등의 취소·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·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)의 부과
- 5.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
- 6.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
- 7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
- 8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
-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 년 이내
- 2.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
-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31조(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) ①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.
 - 1.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, 형의 선고유예·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
 - 2.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

- 3.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
- 4. 과태료, 과징금,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(이 경우,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)
- 5.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
-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,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,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- 제32조(구조금 지급신청 안내) 공공기관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 - 1. 육체적·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
 - 2. 전직·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
 - 3.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
 - 4.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
 - 5.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
- 제33조(협조 등의 요청) 공공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·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, 관계 행정기관,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,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34조(다른 지침과의 관계)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·접수 및 처리,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,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.
 -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.

제5장 보칙

제3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공공기관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

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. 9. 27.부터 시행한다.

신 고 서

접수일자			접수번호				처리기간	일		
	이름			주민등록	록번호					
신고자	주소									
	연락처			소속						
	이름									
피신고자	소속			주소		알고 있는 경우 기재				
	직위	알고 있는 경	병우 기재	연락처		알고 있	있는 경우 기재			
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										
공익신고 내용										
증거자료 등 첨부서류	별첨가능									
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	(신 <u></u>	사원, 수사기관, * 고기관 : 사형사행정소송	신고일 :		<u> </u>	조치결과 :)	()		

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고자 (인 또는 서명)

경기아트센터 사장귀하

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[서식 2]

공 익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

관리번호	접수일자	제목	접수경로 (①직접 접수, ②권익위 이첩·송부, ③타기관 이송)	처리결과 (조사·수사, 타기관 이송, 종결)	비고
2022 - 00					

접 수 증

접수번호 20 공익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

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.

20 년 월 일

경기아트센터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(인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접 수 증

접 수 번 호 20 공 익 제 호 접 수 일 자 20 년 월 일 신 고 제 목 신 고 자

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.

20 년 월 일

경기아트센터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(인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

	성명				·민등록번호 국인등록번호)	
신고자	주소					
	연락처					
70LU7	제목					
공익신고	접수일	자			접수번호	
신분공개 동의여부	있습니다 ⇒ [2. 수사기 귀하의 절차를 동의하시	- ' 귀하의 다. 이] 동 관의 ⁻ 신고시 거칠 ⁻ 시겠습니	지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하기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에 구사기관에 고발되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	을 밝히 되거나	기나 암시하는 경 기기나 암시하는 경 기기	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 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거나 암시하는 것에

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고자 (인 또는 서명)

경기아트센터 사장 귀하

대표신고자 선정서

	성명	주민등록번호
대표신고자	주소	
	연락처	
공익신고	제목	
	접수일자	접수번호

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고자: 등 명

경기아트센터 사장 귀하

선정자 명단										
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(연락처)	서명 또는 날인							
	성명									

- 1.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
- 2.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

작성방법

첨부서류

1.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[서식 6]

20 년	월 일	접수	
20	공익 제	호	

접수자	공익신고 책임관

공 익 신 고 기 록

신고제	목											
담당부	서						담 당					
신고자 선	성명							피신	<u>!</u> 고자성	명		
	조사	수사종료일		20	년	월	일		내	용		
	0	송 일	5 일 20 년 월 일			이송기관						
처 리	결.	과통보일	일 20 년		년	월 일			대상자 (대상기관)			
조사기 신분공개 동의여부		조사기관			수	사기	관				담당	공익신고책임관
종 결 일		20				종결	확인					
보존기간		년 (20 까지)										

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[서식 7]

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운영 안내문

- 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
 -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.
 -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 -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
 -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·인사상·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,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 -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-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·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-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.
 -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, 그 형벌,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.
 -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,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공익신고자 보상제도

구 분	지급 대상자	지 급 요 건
보상금	내부 공익신고자	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(100만원 초과하는 벌금,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%~20% 지급)
포상금	공익신고자	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
구조금	공익신고자	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, 이사, 쟁송,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 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

- ※ 내부 공익신고자 : 피신고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 였던 자, 피신고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과 공사·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
- ※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·포상금이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「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」(www.clean.go.kr)의 '알려드립니다'> 신고제도안내 > 신고자 보호(또는 신고자 보상·포상)'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☎ 국번 없이 1398, 110

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[서식 8]

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

-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(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, 제12조 제1항) 관련 규정을 위반 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.

1.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

- 조사·수사기관등은 조사·수사 중이거나 조사·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(법 제12조 제1항)
- 가.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
- 나.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 제7조(인적 사항의 기재생략) 및 제9조(신원관리카드의 열람) 내지 제12조(소송진행의 협의등)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
- 다. "나"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시실을 다른 시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
-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**조사·수사를**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.

2. 공익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

○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**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**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. (법 제10조 제5항) 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[서식 9]

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

접수번호			접수일자	Ā	허리일자
신고제목					
접수번호	20 공익 7	데 호			
처리결과					
결과통보일					
	성 명			주민등록반	년호
신고자	주 소				
	연락처				
이의신청 이 유					

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고자 (인)

경기아트센터 사장 귀하

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

추천일자		접수번호		처리기	간	9	0일				
△ 중원리기	추천기관명										
① 추천기관	소관부서	(전회번호)									
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						
	주 소				1						
@ #AL7	연 락 처										
② 포상금 지급대상자	소 속										
시티네싱사	직업(직위)										
	[] 내부 공익신고자	: -		[] 외부 공약	익신고자						
	[]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시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.										
③ 추천사유											
	신고기관			신고일자 20 년		월 일					
④ 공익신고	신고내용										
조사결과	조사수사기관			결과통지일자	20 년	월 일					
	통지내용										
	등에 의한 보상금 및	청구여부		[] 있음 [] 없음	(기관명 :)				
포상금 청구	또는 수령사항	수령여부		[] 있음 [] 없음	(금액 :)				
「공익신고자 <u></u>	코호법」 제26조의2저	1항에 따른 포성	상금의	지급대상자를	위와 같이	추천합니	다.				
첨부서류 :											
		⑥ 추천인 : 직위	4	20 년	월 일 성명		(인)				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											

※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: 뒤쪽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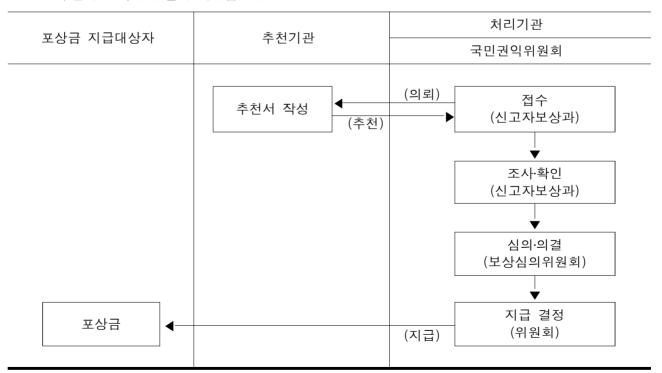
※ 구비서류

- 1.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
- 2.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
- 3.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

※ 작성요령

- 1.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, 소관부서명,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
- 2.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, 우편 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,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[]에 ✔를 표시합니다. 또한,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[]에 ✔를 표시합니다.
- 3.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.
- 4.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,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,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,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.
- 5.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 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[]에 ✔를 표시합니다.
- 6.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, 관인을 날인합니다. 다만, 동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(인)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※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<<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>>

□ 신고를 준비하실 때

- 언론,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.
 - 언론,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공익신고기관(국민권익위, 관련 행정기관·감독기관, 수사기관 등)에 신고해주십시오.
-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.
 - 구체적인 자료·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,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(예. 언론스크랩)만 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.
-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.
 -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,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□ 신고를 접수하실 때

- 허위신고, 금품·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.
 -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(예. 언론)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□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·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

- 신고자에 대한 고소·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.
 - 그러나, '구조금'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(예. 변호사 수임료)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 -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,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.

□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(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)

-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
 -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·지자체 수입의 4~20%를 지급하지만, 감액·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,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.